

임시정부 수립 후 1920년대에 전개된 경호 활동 고찰

The Investigate of Security Service History focused on 1920s aft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Korea

김 은 정*

<목 차>

| | |
|--------------------|----------------------|
| I. 서 론 | IV. 독립운동단체의 경호부(警護部) |
| II. 임시정부의 경호원 | V. 일상생활 속의 경호 |
| III. 연통제의 경호과(警護科) | VI. 결론 |

<요 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기틀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경호 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부터 1920년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정부 수호’의 역할로 인지되었다. 이에 김구는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호원들의 훈련까지 관여할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 중에 ‘통신원 급 경호원’이란 언급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경호과(警護科)’의 등장과 함께, 그 업무를 규정한 『도사무분장규정』, 『부군처무규정』을 통해서도 당시 임시정부 내 경호임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1920년대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에서 나타난 ‘경호부(警護部)’의 활약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의열 및 항일무장 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호는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 주요 인사들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경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가 정착하는데 있어 1920년대의 시대적 정황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 경호과, 연통제, 독립운동, 임시정부, 경호사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외래교수

I. 서론

한국의 경호사에서 경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정부 수립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국의 정부 수립은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수립’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政府) 수립’으로 구분되어,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기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경호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과정은 경호사의 측면에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경호사(警護史)는 경무국(警務局)의 하위존재로 경호부와 경호원의 존재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술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경호원의 활동은 물론, 그 당시 경호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임시정부 시절 김구가 경호원을 임명하고 훈련에 까지 관여하는 등 경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 그리고 임시정부에 ‘경호과(警護科)’라는 부서의 창설과 더불어 『도사무분장규정』과 『부군처무규정』을 통해 ‘경호과’에 속한 경호원의 세부적인 활동까지 법률로서 공포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경호 관련 규정 외에도 1920년대 독립운동단체의 의열 및 항일무장 투쟁에서 경호부(警護部)의 활동이 당시의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더불어 1920년대에 이미 일상생활에서 경호가 오늘날과 같이 신변보호를 담당하거나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에도 사용된 사례들을 통해, 오늘날 경호의 정착에 있어 이 시기의 인식이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경호 관련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과도기적 상황 하에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확고한 자리매김과 연관되어 경호 관련 활동과 경호원의 위치나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경호사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 한국 정부 차원에서 경호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첫 단계로서 경호와 관련된 초기 상황들을 살펴보고자 임시정부의 각종 규정, 관련 문서, 관련 서적,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II. 임시정부의 경호원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제1회 임시의정원(臨時議定院)을 개원하였고, 『대한민국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함으로써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공포(公布)와 함께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후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하고,¹⁾ 1919년 11월 5일에는 임시관제(臨時官制)를 발표(發布)하였다.²⁾

임시관제의 조항 중 내무부(內務部)의 경무국(警務局)과 관련된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경무국의 경무국장 하에 경호부장(警護部長)과 경호원(警護員)을 두었으며,³⁾ 백범일지(白凡逸志)에 기재된 경호원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경무국에서 경호원의 활동이 임시정부 경찰의 실질적인 기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경호원과 관련된 내용은 1919년 9월부터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警務局長)으로 5년간 재직했던 김구(金九, 1876~1949)의 기록에서 나타난다.

경무국의 사무는 현재 세계 각국의 보통 경찰행정과는 달랐다. 그 주요임무는 왜적의 정탐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자의 투항 여부를 정찰하여, 왜의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침입하는가를 살피는 것이었다. 나는 정복과 사복 [便衣] 경호원 20여명을 임명하여 이 일을 수행하였다.⁴⁾

나는 내무총장인 도산 안창호 선생을 보고 정부의 문지기를 시켜달라고 청하였다...(중략)... “서대문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 후일 만일 독립정부가 조직되면 정부의 뜰을 쓸고 문을 지키기로 마음먹은 적이 있다”...(중략)...이에 도산은 쾌히 승낙을 하며 자기가 미국에서 백악관을 지키는 관원이 있는 것을 보았다며, “백범 같은 이가 우리 정부청사를 수호하는 것이 적당하니 내일 국무회의에 제출 하겠다”하여,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였다.⁵⁾

1) 고숙화, 1999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하)』, 국가보훈처, 732~733쪽.

2) 국사편찬위원회, 1969 『일제침략 하 36년사4』, 619쪽.

3) 박범래, 1988 『한국경찰사』, 162쪽.

4) 김구(도진순 주해), 2002 『백범일지』, 돌베개, 302쪽.

김구에 의한 경무국 경호원들의 임무 소개를 통해서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된 시대적 상황의 긴박함을 추론할 수 있음은 물론, 임시정부의 건물을 지키는 경호를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문지기’라는 표현처럼 이들이 당시 문을 지키는 경호를 ‘정부 수호’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의 출입자 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사례를 들었다는 점은 이미 안창호(安昌浩, 1878~1938)가 미국식 경호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해의 임시정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경찰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무국은 경찰관보다는 경호원이 더 필요했는데, 이는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의 활동을 경계하고 살피는 것을 넘어서, 독립운동가의 보호까지 실행해야 하는 경호원이 요구되었던 까닭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호원의 등장이 김구의 경무국장직 수행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시하게 되는데, 이는 차후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는 김구가 경호원을 등장시킨 것을 통해 임시정부 경무국의 경호원 역할에 높은 비중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범일지에는 경호원의 훈련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구절도 있는데, 이는 임시정부에 경호원의 등장을 제공했던 김구가 경호원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서 나타난다.

나의 신조는 “일을 맡기면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면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호원 한태규(韓泰奎)**는 평양사람인데,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착실하여 7~8년 썬 오는 사이에 안팎 사람들의 신망이 심히 두터웠다. 그는 내가 경무국장을 그만 둔 후에도 경무국 사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원(桂園) 노백린(盧伯麟)형이 아침 일찍 나의 집을 방문하여 말했다. “뒤 도로변에 어떤 젊은 여자 시체가 하나 있는데 중국인들이 한인이라고 떠드니 백범, 같이 나가서 알아봅시다.” …(중략) …**그런데 교살한 수법이, 내가 서대문 감옥에서 김진사로부터 활빈당(活貧黨)에서 사형하는 방법을 배워 경호원들에게 연습시켜 정탐꾼 처형에 응용하던 수법과 흡사하였다.** …(중략) …그런 악한을 절대 신임하였던 나야말로 세상에 머리 들기 어렵다는 자괴심으로 지냈다.⁵⁾

한태규라는 경호원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김구가 당시 경무국 소속 경호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 교살(絞殺)하는 방법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나는 5년 동안 경무국장으로서 신문관·검사·판사뿐만 아니라 형 집행까지도 담당하였다. 범 죄자 처결하는 것을 요약하면, 말로 타이르는 것 아니면 사형이었다(김구, 2002: 302).”는 언급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경호원에 대해 ‘절대 신임’하였다는 표현에

5) 김구(도진순 주해), 2002, 위의 책, 301~302쪽.

6) 김구(도진순 주해), 2002, 위의 책, 307~309쪽.

서, 당시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경호원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직책의 중요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연통제의 경호과(警護科)

임시정부의 경호원 역할은 연통제(聯通制)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 연통제는 상해 임시정부의 비밀행정조직으로 한국 내 지방행정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실시되었는데,⁷⁾ 연통제에 경호와 관련된 내용은 1919년 7월 10일 공포된 국무원령 제1호 ‘임시연통제’ 이후, 1919년 12월 1일에 공포된 개정교령 제2호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다음은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臨時地方聯通制關係法令集)』에 등장하는 경호 관련 내용이다.

제20조(第二十條) 도급 부군(道及 府郡)에 통신원(通信員) 급(及) 경호원(警護員) 약간(若干)을 치(置)흠.

제21조(第二十一條) 통신원(通信員) 급(及) 경호원(警護員)에 관(關)한 규정(規程)은 내무장관(內務總長)이 차(此)를 정(定)흠.⁸⁾

여기에서 ‘통신원 급 경호원(통신원 및 경호원)’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통신원과 경호원의 직위를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교통부 소속이었던 통신원들의 업무는 단지 통신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 이는 교통국(交通局)이 국외(중국 상해)에 위치했던 임시정부와 한국 내의 활동을 일치시킨다는 목적으로 실시된 연통제의 운영에 큰 역할을 차지하면서, 통신원들은 독립운동의 기본적인 역할이었던 자금 모집·정보 수집 등의 실질적인 활동을 주로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원과 함께 등장했던 경호원의 존재는 통신원의 역할에서 경호 부분을 중요하게 암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아래는 교통국의 활동 내용이다.

- ① 정부의 자금을 모집하는 것
- ② 국내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것
- ③ 정부에 지령, 서류를 국내에 전달하는 것

7) 이현희, 1982『대한민국임시정부사(大韓民國臨時政府史)』, 집문당, 101쪽; 125쪽.

8) 대한민국임시정부, 1948『임시지방연통제관계법령집(臨時地方聯通制關係法令集)』; 국사편찬위원회, 『大韓民國臨時政府憲章 法律 및 命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임정편Ⅱ)』, 한국사데이터베이스.

④ 교통국의 조직 및 독립운동을 위한 인물소개와 연락을 하는 것

...(중략)...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상해, 안동 간의 왕복은 물론 무기, 탄약의 운반까지도 맡았던 것이다.⁹⁾

위의 내용 중에 당시 교통국이 중국 상해(上海)의 임시정부와 한국의 안동(安東) 간을 왕래하였던 독립운동가들의 신변보호까지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통신원의 역할에 경호 임무가 부여되었던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독립운동가의 신변보호라는 경호 임무가 기존에는 통신원에게 부여되었으나,¹⁰⁾ 1919년 12월 1일에 공포된 개정교령 제2호에서 통신원과 함께 경호원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경호 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 비중이 변화가 생겨 경호원의 직책이 추가되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연통제의 개정 교령 제2호에서 ‘통신원’과는 차별화된 표현으로 ‘경호원’이 등장한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교통국 통신원의 역할에 추가하여 적극적인 보안·보호의 개념이 포함된 경호원의 역할이 요구되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호원’ 등장의 의미 외에도 연통제를 통해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활동한 ‘경호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연통제의 행정기구 속에서 <표1>과 같이 경호원의 위치가 분명히 입증된다는 점 때문이다.¹¹⁾ 각 도와 각 부군별로 경호원을 규정하여, 면(面) 단위가 아닌 도(道)와 부(府)·군(郡) 정도의 대(大)·중(中) 단위 지역에 경호원의 배치가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당시 경호원 역할의 비중을 알 수 있다.

연통제의 세부 규정 중 경호원 업무의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령(內務部令) 제3호(1919년 12월 5일 시행)인 『도사무분장규정』과 『부군처무규정』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각 도(道)에 설치되었던 경무사(警務司)의 기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기밀과(機密科)와 함께 운영되었던 경호과(警護科)의 존재와 그의 업무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

9) 이연복, 199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교통국과 연통제』 『대한민국임시정부 30년사』, 국학자료원, 119~120쪽.

10) 국민우회 경호원에 기사를 통해, 경호원과 통신원의 역할이 동일하게 취급되었던 경우도 확인된다. 『국민우회(國民友會)의 경호원(警護員) 고진태(高鎭泰)-마침내 잡히어 청진검사국에』 『동아일보』, 1921년 7월 30일 3면. “간도 화룡현사무사 남상동에 사는 고진태(26)는 작년 음력 삼월 경에 간도 송정동에 국민우회(國民友會)가 설치되며 통신원(通信員)과 경호원(警護員)이 되어 강기운(姜基雲)과 박련환(朴連煥)등으로 더불어 권총을 가지고...”

11) 이연복, 1999 위의 책, 132쪽.

<표 1> 연통제의 각 도, 부, 군, 면의 행정기구

| | | |
|---------------------|----------------------|---|
| 도(道) | 독번(督辦)-1인 | 참사(參事) 4인 비서실(秘書室), 내무사(內務司), 재무사(財務司), 교통사(交通司), 경무사(警務司) |
| | | 장서(掌書) 약간 명-담당사무(擔任事務) |
| | | 경감(警監) 2인-경찰(警察), 위생(衛生) |
| | | 기수(技手) 약간 명-기술 |
| | | 통역(通譯) 약간 명-통번번역(通辯翻譯) |
| | | 통신원(通信員) 약간 명 |
| | | 경호원(警護員) 약간 명 |
| 참의(參議) 7인(내무총장이 임명) | | |
| 부(府) 군(郡) | 부장(府長), 군장(郡長)-1인 | 참사(參事) 1인 |
| | | 장서(掌書) 약간 명 |
| | | 경감(警監) 1인 |
| | | 기수(技手) 통역(通譯) |
| | | 통신원(通信員) 약간 명 |
| | | 경호원(警護員) 약간 명 |
| 참의(參議) 5인(내무총장이 임명) | | |
| 면(面) | 면감(面監)-1인 | 조사(助事) 약간 명 |
| | | 협의원(協議員) 3인(독번이 임명) |

<도사무분장규정(道事務分掌規程)>

제(第)6조(條) 경무사(警務司)에 기밀과(機密科) 급(及) 경호과(警護科)를 치(置)함.

기밀과(機密科)에서는 좌(左)의 사무(事務)를 장(掌)함.

- 一. 경호원(警護員)의 복무(服務) 급(及) 규율(規律)에 관한 사항
... (중략) ...

경호과(警護科)에서는 좌(左)의 사무(事務)를 장(掌)함.

- 一. 경호(警護) 구역(區域) 급(及) 배치(配置)에 관한 사항
- 二. 인구(人口)기타(其他)조사(調查)에 관한 사항
- 三. 신문(新聞)잡지(雜誌)기타(其他)인쇄물(印刷物)에 관한 사항
- 四. 집회(集會)급 결사(結社)에 관한 사항
- 五. 부(府) 중(中) 경호(警護)에 관한 사항
- 六. 적(敵)의 행위(行爲)를 방조(幫助)하는 불량자조사에 관한 사항
- 七. 적(敵)에 의세(倚勢)하는 재산가(財產家) 조사(調查)에 관한 사항

<부군처무규정(府郡處務規程)>

제(第)4조(條) 경무과(警務科)에서는 좌(左)의 사무를 장(掌)함.

...(중략)...

十一. 서(署), 청(廳) 중 경호(警護)에 관한 사항

...(중략)...

제(第)6조(條) 서무과(庶務科) 급(及) 재무과(財務科)의 주임은 부군장서(府郡掌書) 중으로 독변(督辯)이 차(此)를 명하고, 경호과(警護科)의 주임은 경감(警監)이 차(此)에 장(掌)함.¹²⁾

『도사무분장규정』에서 도(道) 단위 경무사의 역할이 기밀과와 경호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경호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경호원의 복무에 대한 규율을 제1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무사의 경호과(警護科)에 경호 관련 주요 업무는 경호 구역 배치와 부(관청)의 경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군처무규정(府郡處務規程)』에 드러난 경호 관련 업무는 서(경찰서), 청(관청)의 경호인데, 부(府)·군(郡) 경호과(警護科)의 주요 업무가 제4조 11항 ‘서(署)와 청(廳)의 경호에 관한 사항’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볼 때, 경호원의 업무가 건물의 내부와 외곽에 대한 경비(警備)의 측면이 강했다고 감지된다. 『부군처무규정』에서 경호원의 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 부(府)와 군(郡)의 경호과 업무는 도(道) 단위의 경호과(警護科)와는 달리 당시 경찰의 업무와 큰 차이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부군처무규정』 제6조 ‘경호과(警護科)의 주임은 경감(警監)이 담당한다’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가늠되는 부분이다. 결국, 당시 부(府)와 군(郡)의 경호과 업무는 경찰 업무의 한 분야로서 책정된 측면이 나타나지만, 경호과(警護科)라는 구분을 통해서 볼 때, 경호의 중요성은 명확하게 지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도사무분장규정(道事務分掌規程)』에서 ‘六. 적(敵)의 행위(行爲)를 방조(幫助)하는 불량자조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독립운동과 관계되는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임시정부의 규정에서 나타난 경호과의 업무 내용이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의 ‘경호’ 명칭 사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즉, 당시 독립운동단체 사이에서 ‘경호’의 표현은 독립운동 전반에서 지켜야 할 것을 보호하거나 중요 정보를 조사하여 비밀리에 확보하고 누설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보호 및 보안 업무’의 대의적인 측면으로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2) 이연복, 1999 『임시지방연통제관계법령집』 『대한민국임시정부 30년사』, 국학자료원, 455~461쪽.

IV. 독립운동단체의 경호부(警護部)

임시정부의 법률 규정에서 경호가 독립운동의 역할로 명시된 이후, 각종 독립운동 단체들에서도 경호와 관련된 활동이 나타났다. 즉,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은 경호부(警護部)의 활동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들 경호원들의 활동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각종 업무와 다르지 않았다. 다음의 기사는 독립과 관련된 문서를 배포한 국민회 경호원에 대한 기사이다.

본적 황해도 신계군...조춘식은 재작년 음력 칠월 경에 북간도에 가서 동시에 거주하는 조선인으로 조직된 국민회(國民會)에 가입하여 동단의 서부지회(西部支會)를 주장하는 홍정도(洪正圖) 한대진(韓大震) 등이 통솔하는 부하에 있으면서 경호원(警護員)이 되어 작년 시월까지 여러 가지 독립에 관한 불온문서를 다수히 배포하고 한편으로 독립을 반대하는 친일조선인과 일본인 정람의 행동을 정찰하고자 경성에 와서 두류할 동안 발각되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오래 동안 취조중이었다가 작일에 동원공판에 붙이었다.¹³⁾

독립운동에 관련된 엄밀한 정보 수집 등의 일 외에도 경호원들 중에는 일본의 형사나 밀정(密偵)을 직접 살해하여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받은 경호원도 있었다. 특히, 징역을 선고받은 경호원의 기사가 많은데,¹⁴⁾ 이를 통해 경호원들의 활동이 독립운동과 연관된 행동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였으며, ‘경호부(警護部)’ 등의 표현이 빈번함으로 볼 때 다수의 경호원들로 구성된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독립운동으로 군자금도 모집하고 살인까지 한 사람으로...한국독립당의 한 기관인 간도경호부(間島警護部)의 부원이 되어 대정9년 6월경에 경호부장 장성순(張成順)의 명령을 받아...니승렬, 최영진, 문치룡은 경호에 책임을 맡고...국민회(國民會) 경호원(警護員)이 되어 가지고 일본의 탐정이라는 김순홍(金順興)을 총살한 까닭으로...¹⁵⁾

13) 『국민회(國民會) 경호원(警護員)-경성에서 공판에』 『동아일보』, 1921년 8월 23일 3면.

14) 독립운동과 관련된 경호원의 기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호원들이 독립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행위로도 여겨질 수 있다.

15) 『경호원(警護員)의 공소심리(控訴審理)』 『조선일보』, 1921년 8월 11일 3면.

국민회(國民會)의 경호부원(警護部員)으로 대정 9년경부터 육혈포와 단도(短刀)를 가지고 국경일대로 돌아다니면서 군자금(軍資金)을 모집하며 일변 일본의 비밀탐정을 만나는 대로 쏘아죽여 일본(日本)관헌의 가슴을 서늘케 하던...¹⁶⁾

함북(咸北) 영성(嶺城) 경찰관 주재소 습격사건...정봉조(鄭鳳朝), 30)...징역 15년에 처한 것을 불복하고...독립기관과 합병이 되어 광정단(光正團)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자 그 단체의 군사부 차장이 되어서 군사에 관한 일반 사무를 보아오다가 금년 봄 삼월경에 그 단체의 경호부장(警護部長)으로 전근되어 일본 밀정의 침입을 경계하고 금년 구월에 군자금을 모집할 목적으로 다수히 무기를 준비하여...자기의 부하였던 군인 수십 명을 이끌고 조선 안에 들어와서...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순사 한명은 즉사하고...¹⁷⁾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1920년대 독립운동에 경호원의 활동은 한국사에서 언급되는 독립운동가들의 의열(義烈)투쟁 및 항일무장투쟁과 맥을 함께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그들의 활동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할로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호원에 대한 인식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당시 시대적인 통념에 의해서 은폐된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에서 경호원에 대한 평가는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국경 지대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투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경호원의 활동도 일본의 눈을 피해 중국과 한국에서 추진했던 최 일선 독립운동으로서의 평가가 요구된다.

V. 일상생활 속의 경호

임시정부를 비롯한 각종 독립운동단체에서 경호가 등장했으나, 경호는 이러한 대의적인 측면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등장한 경호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임시정부나 독립운동과 같이 의도적인 행위규범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출현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경호의 주된 목적과 같이 신변보호의 차원에서 등장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16) 『사형(死刑)으로 무기(無期)의 판결(判決)-피고는 또 불복, 국민회 경호부원 사건』 『조선일보』, 1924년 10월 14일 2면.

17) 『광정단(光正團) 경호부장(警護部長) 공소(控訴)』 『조선일보』, 1923년 11월 4일 3면. 이후 정봉조는 1924년 8월 11일에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광정단원(光正團員) 정봉조』 『조선일보』, 1924년 8월 12일 3면).

아래 첫 번째 기사는 권총습격 사건에 대한 방어책으로 부호(富豪)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경찰관들로 구성된 별동대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두 번째 기사는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열차 내에서 경찰이 경호를 수행한 사례이다. 세 번째 기사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의 마찰과 관련해 공립학교 학생들이 순사들의 경호를 받으며 통학한다는 내용이다. 오늘날과 같이 필요에 따라서는 1920년대에 어린 학생들도 경호를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는 점이 이색적으로 보이는 한편,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에서 신변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경호’라는 표현이 실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1920년대에 이미 작금의 안전이란 의미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측면으로 ‘경호’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경호는 신변보호만을 전담하는 전문직으로서 경호원의 등장과 함께 경찰의 세부적인 업무의 하나로도 자리 잡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권총습격 사건에 대한 범인 수사는 경기도 경찰부와 종로서(종로경찰서-연구자)를 비롯하여 시내 각 경찰은 26일 밤 11시경까지는 무장경관으로 시내 각서에 거미줄과 같이 비상선을 쳐놓았으나, 아무 소득 없이 동열한 시 이후부터는 사복무장 경관을 시내에 풀어 놓아 행색 수상한 사람들의 취조와 처처에서 엄중한 가택 수색을 행하게 하여 17일 아침까지에 이르렀으나, 범인의 종적은커녕 단서조차 확실한 것을 얻지 못하고 말았는데, **경찰에서는 각각 자기 기관 내의 부호들과 협박장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코자 별동대로 하여금 그들의 신변을 떠나지 아니하고 크게 경계 중이라더라.**¹⁸⁾

…금번 총영사관 경찰서에서는 검거된 사람 가운데서 간민교육연구회 부회장 전일(全一)씨 외에 6명에게 대하여 각각 3년간씩 재류금지처분(在留禁止處分)을 명하여 지난 25일 용정 발(發) 제2번 열차로 3, 4인 경관 경호로 용정(龍井)을 출발하여 조선 내지로 압송되었는데, 이와 같이 재류금지로 처분까지 하는 당국은…¹⁹⁾

사립 소인학교의 복교운동에 대한 최근 상황은 별항과 같거니와 한편 공립보통학교 학생은 매일 **순사의 보호를 받아 통학을 한다는데** 이제 그 이유를 듣건대, 이기 사립소인학교는 설립된 지가 15년이라 긴 역사를 가졌을 뿐 아니라…여러 가지 관계로 애착심이 굳어 보교에 대한 갈망은 실로 상상 이상임으로 공립학교에 대한 반감으로 **통학하는 학생의 신**

18) 『경계(警戒)는 엄중(嚴重)한데 범인은 안전(安全)?-별동대(別動隊)로 부호(富豪)를 경호(警護)』 『동아일보』, 1926년 10월 28일 2면.

19) 『경관(警官) 경호(警護)리(裡) 경외(境外)축출(逐出)』 『조선일보』, 1928년 4월 30일 2면.

변에 어떠한 위해가 있을 모른다는 억측으로 동면에 있는 특별주재소(特別駐在所) 순사로 하여금 매일 일리 혹은 반리나 되는...곳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오전 상학시간(등교시간-연구자)과 하학시간(하교시간-연구자)을 맞추어...다닌다더라(완도).²⁰⁾

또한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에도 경호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 같은 내용은 동아일보의 문맹퇴치(文盲退治)운동과 전조선 여자정구대회에 관련된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경호(警護)’이지만 본문은 ‘경위(警衛)’로 표현한 점을 통해서 행사의 질서 정돈과 관련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1920년대 한국에서 ‘경호’는 신변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의 ‘장내 질서 정리’는 ‘경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기사는 경성역 앞의 광장에서 진행된 이상재(李商在, 1850~1927)의 장례식 경호를 담당하고자 조직된 경호대가 정치인, 독립운동가 등 장례 참석자들의 신변경호를 담당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 역시 소년대가 경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관람객의 혼잡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체육대회의 참가 선수를 비롯한 관람객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사가 창립 8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이 ‘글장님’을 물리치자는 계획을 한번 만천하에 발표하는 동시에 그 선전의 순서를 연 삼일동안 보도하였거니와 이상에 소개한 이외에...서울륜업회(輪業會)에서는 회원 약 100명이 자전거에 ‘문맹퇴치’기를 달고...경성전기회사에서는 매일 운전하는 100여 대의 전차에 포스터를 걸어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운전하기로 되었고 종로 기독교청년회에 있는 소년척후대(少年斥候隊)²¹⁾에서는 경성에 있는 ‘보이스카웃’ 수십 명이 당일 행렬에 출동하여 경위에 진력하여...수천 명의 소년단 행렬의 질서를 정돈하고 또 경위(警衛)하기에 진력할 터임으로...²²⁾

고(故) 월남 이상재 선생의 장의에 대한 영결식장은 다수한 참석자들을 수용할 형편상 경성역전(京城驛前)...고 월남 선생의 장의에 대하여 경호부장(警護部長)으로 당선된 조철

20) 『순사(巡查) 경호(警護)로 공보교생(公普校生)통학(通學)-학생의 신변이 위태롭다하여 공보교생 통학에 순사가 경호』 『동아일보』, 1927년 6월 11일 2면.

21) 일제강점기의 보이스카웃 단체로 일컬어지는 척후대는 적의 형편이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려고 조직하던 소규모 부대를 말한다. 1922년 조선소년군(朝鮮少年軍)과 조선척후대(朝鮮斥候隊)라는 명칭으로 각각 발족하였고, 1937년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 해산되었다가 1946년 대한보이스카우트로 다시 재발족하였다.

22) 『문맹퇴치(文盲退治)-소년척후(少年斥候) 출동 경호(警護)』 『동아일보』, 1928년 3월 28일 2면.

호(趙喆鎬)씨는 척후대(斥候隊) 급 소년군(少年軍)으로써 경호대(警護隊)를 조직하여 가지고 장의 당일에 장의행렬을 엄중히 경위하게 되었다.²³⁾...행렬의 선두에는 경호부장(警護部長)의 뒤에 진영(眞影)을 모시고 그 다음에는 소년척후대, 경성악대(京城樂隊)...조선소년군과 경호부장(警護部長)이 경호하여 제제창창(濟濟蒼蒼)한 발인행렬이 정숙히 지나가자 연도에 나열한 만도의 군중은 엄숙한 태도로 잠깐 동안 고개를 숙여 체백(體魄)조차 떠나가는 원로의 마지막 길을 조상하는 성의를 보였더라.²⁴⁾

평양에서 주최하는 전조선여자정구대회가 체육계(體育界) 유지인사의 기대와 일반사회의 인기의 초점이 되어 6월 13일 오전 9시에 거행될 것은 우리가 아는 바이거니와 평양에서는 소년계에서 까지 동 대회를 환영하여 시내 차관리후진청년회(叙貫里後進青年會) 소년대(少年隊)는 대회 당일 관람자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경호(警護)의 임무를 자담(自擔)하고 대회의 경황에 가세할 터이라더라(평양).²⁵⁾

1920년대의 독립운동을 위해 전문적인 경호원이 등장했던 반면에, 일반 사회에서 소년대나 소년척후대라는 청소년 교육단체까지 신변보호를 포함한 안전을 담당한다는 의미의 ‘경호’가 일상화 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경호’라는 표현이 오늘날의 개념과 큰 거리감 없이 정착되는데 있어 1920년대라는 시기의 중요함을 되새기게 한다.

VI. 결 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틀로 작용되었는데, 이러한 역할은 경호 분야에서도 예외가

23) 『월남(越南) 선생 사회장외(社會葬儀)-경호대(警護隊) 조직(組織)』 『조선일보』, 1927년 4월 3일 2면. 당시에는 ‘경호’와 마찬가지로 신변보호의 측면으로 ‘호위’라는 표현도 사용되었다. “이 일은 월남 선생이 미국계실 때 있던 일화이다. 어느 날 한국공사관 일행이 구식예복을 입고 워싱턴 시가(市街)를 구경할 때 이상한 복장을 처음 보는 미국 아동들은 공사일행에게 돌을 던져가며 조롱하려 하매, 호위(護衛) 중이던 미국 관헌은 아동을 검속하였다. 이 때 월남선생은 관헌의 검속을 한사하고 말리어, 놓아 주기를 청하였다. 이리하여 놓인 아동들이 후일에는 공사일행에게 감격의 경의를 표하고 이 말이 소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대학교에 퍼져서 미국사회에서 한국공사의 훌륭한 인격에 경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월남(越南) 이(李) 선생(先生) 남기신 일화(四)-조선(朝鮮) 예복(禮服) 입고 미국 가두(街頭) 유람(遊覽)』 『조선일보』, 1927년 4월 3일 2면.)”

24) 『경호부장(警護部長)을 선두(先頭)로 장의(葬儀)행렬 출발』 『조선일보』, 1927년 4월 8일 2면.

25) 『소년대(少年隊)가 경호 담당-평양 전조선 여자정구대회에』 『조선일보』, 1925년 6월 13일 2면.

아니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경호 활동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부터 192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내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임시정부의 경호원, 연통제의 경호과(警護科), 독립운동단체의 경호부(警護部), 일상생활 속의 경호라는 네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정부의 문지기’라는 표현 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로 취급되었다. 초대 경무국장 김구는 임시정부에 경무국 소속으로 경호원을 등장시켰고,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경호원의 훈련에까지 관여할 정도로 경호원에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 중에 ‘통신원 급 경호원’이란 언급에서 드러난다. 독립운동가의 신변보호라는 경호 임무가 기존에는 통신원에게 부여되었으나, 1919년 12월 1일 공포된 개정교령 제2호에 통신원과 함께 경호원이 등장한 것은 경호 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 비중이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경호과(警護科)’가 등장하였고, 그 업무를 규정한 「도사무분장규정」, 「부군처무규정」을 통해 임시정부에서 경호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셋째, 1920년대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단체의 활동에서 경호원의 역할이 나타났다. 경호원들의 활동은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에서 요구했던 각종 업무와 다르지 않았으며, ‘경호부(警護部)’를 조직하는 등 1920년대 경호원의 활동은 한국사에서 민족독립운동으로 취급되는 의열(義烈) 및 항일무장 투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경호는 신변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년대나 소년척후대라는 청소년 교육단체에서까지 신변보호 및 안전을 담당한다는 의미의 ‘경호’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가 정착하는데 있어 1920년대의 시기적인 중요성을 각성하게 한다.

참 고 문 헌

- 고숙화(1999).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하)』. 국가보훈처
- 국사편찬위원회(1969). 『일제침략 하 36년사4』
 _____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임정편Ⅱ)』
- 김구(도진순 주해)(2002). 『백범일지』. 서울: 돌베개
- 대한민국임시정부(1948). 『임시지방연통제관계법령집(臨時地方聯通制關係法令集)』
- 동아일보(1921). “국민우회(國民友會)의 경호원(警護員) 고진태(高鎭泰)”. 7.30:3.
 _____ (1921). “국민회(國民會) 경호원(警護員)”. 8.23:3.
 _____ (1926). “경계는 엄중한데 범인은 안전?-별동대로 부호를 경호(警護)”. 10.28:2.
 _____ (1927). “순사(巡査) 경호(警護)로 공보교생 통학”. 6.11:2.
 _____ (1928). “문맹퇴치(文盲退治)-소년척후(少年斥候) 출동 경호(警護)”. 3.28:2.
- 박범래(1988). 『한국경찰사』. 경찰대학
- 이연복(1999). 『대한민국임시정부 30년사』. 국학자료원
- 이현희(1982). 『대한민국임시정부사(大韓民國臨時政府史)』. 집문당.
- 조선일보(1921). “경호원(警護員)의 공소심리(控訴審理)”. 8.11:3.
 _____ (1923). “광정단(光正團) 경호부장(警護部長) 공소(控訴)”. 11.4:3.
 _____ (1924). “광정단원(光正團員) 정봉조”. 8.12:3.
 _____ (1924). “사형으로 무기의 판결-피고는 또 불복, 국민회 경호부원 사건”. 10.14:2.
 _____ (1925). “소년대(少年隊)가 경호 담당-평양 전조선 여자정구대회에”. 6.13:2.
 _____ (1927). “경호부장(警護部長)을 선두(先頭)로 장의(葬儀)행렬 출발”. 4.8:2.
 _____ (1927). “월남(越南) 선생 사회장의(社會葬儀)-경호대(警護隊) 조직(組織)”. 4.3:2.
 _____ (1927). “월남(越南) 이(李) 선생(先生) 남기신 일화(四)”. 4.3:2.
 _____ (1928). “경관(警官) 경호(警護)리(裡) 경외(境外)축출(逐出)”. 4.30:2.

ABSTRACT

The Investigate of Security Service History focused on 1920s aft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Korea

Kim, E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security service history as enlightenment period from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1920s. This study used materials by historical facts for the regulations and books in provisional government, newspapers in 1920s. There are four parts conclusion of this study: police departm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security service agency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security service agents of an independence movement, the general society of Korea.

Firstly, Kim Gu, a prominent Korean nationalist leader, was understand of security service which was to protect provisional government from the enemy. So, Kim Gu participated in training of security service agents in the police departm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Secondly, there was security service agency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1920s, security service agency and agents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regulation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t the beginning of the security service agency's appearance was influenced on background and circumstances for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who helped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Japan.

Thirdly, security service agents led an active for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private organizations in 1920s. They carried on an independence movement in defiance of Japanese coercion as nationalist in Korea history.

Fourthly, security service came out the general society of Korea in 1920s. The security service was not just for safety, but also for its security system and peace of mind, which were influenced by the political situation, social environment in 1920s. For the this reason, now security service has safety perception in Korea despite the historical progress.

Key Words : Security Service Agency, Security Service Regulations,
Independence Movement, Provisional Government,
Security Service History